

『2026년 경기도 양자-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』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『2026년 경기도 양자-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19일
한국나노기술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및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, 최고 수준의 반도체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. 따라서, 국가 핵심기술인 양자분야와 경기도 내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.

□ 사업기간 : 2026. 4. ~ 11.

□ 지원대상 : 경기도 소재 양자-반도체 관련 기업

□ 지원규모

구분	선정 수	도 지원금	기업부담금	합계
① 양자-반도체 융합 R&D 지원*	융합 R&D	8개社	100백만원/年	20백만원 이상/年 (현금 50% + 현물 50%)
	양자 전환(QX)	5개社		
② 기업지원데스크 (한국나노기술원 전문가 컨설팅)	12개社	-	-	-
③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(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컨설팅)	예산 소진시까지	30백만원/年	-	30백만원

* (최대 2년 심화지원)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연차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지원후보 선정

* 도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공급가액 기준, 부가가치세(VAT)는 지원 제외

2. 신청자격

□ 경기도 소재 반도체-양자기술 관련 중소·중견기업
(H/W, S/W, 소부장 및 서비스 포함)

*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(본사 또는 사업장), 공장등록증명서,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 부서)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

□ 기업 단독연구개발 또는 공동연구기관(대학,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)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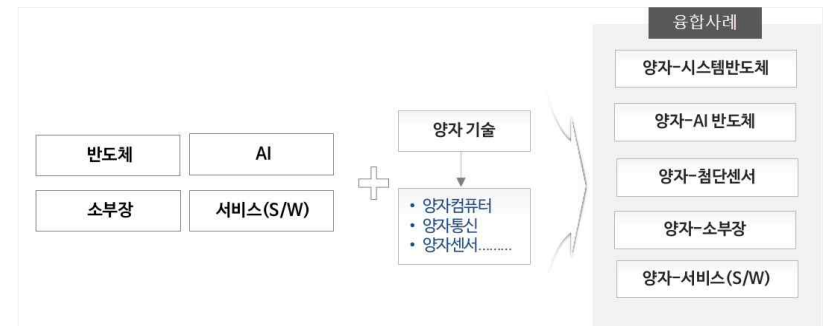
*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연구기관과 계약서 제출 필수

3.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

□ 사업내용

○ 양자-반도체 융합 R&D 지원

- (융합 R&D) 반도체 공정 기술 기반 양자 AI용 칩, 센서, 중계기 등 핵심 소자 및 설계 기술 고도화 지속 지원(8개사)
- (양자 전환)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자기술 기반 기업으로 전환(QX) 및 양자기술 내재화 지원(5개사)



* (사업비 구성) 인건비,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,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/시제품 제작경비, 신뢰성 인증 및 시험분석비, 연구활동비 항목 내 자율적 구성(인건비는 현물계상 등)

* 공동연구기관 소속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한하여 현금 계상 가능

- (기업지원데스크) 기술원 자체적인 기술·인력·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원 컨설턴트가 참여기업의 기술애로분석 및 단기기술지원(기술정보, 설계/해석, 시제품 제작 및 개선, 사업화 등) * 기업부담금 없음, 최대 3개월
- (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) 양자기술 및 사업화 외부 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, 기술정보 제공(특허 포함) 또는 투자처 및 주요 기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* 기업부담금 없음, 예산 소진 시까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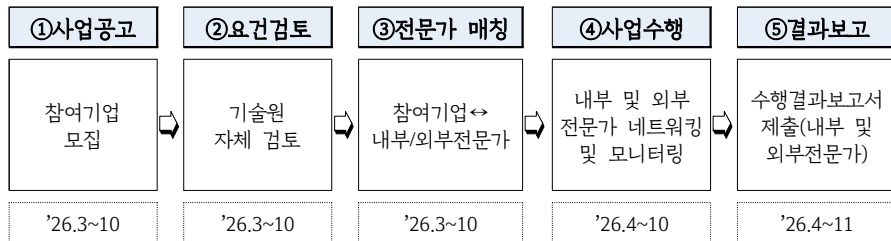
□ 추진절차

※ 평가, 선정, 협약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·변경 될 수 있음.

○ (융합 R&D 지원)



○ (기업지원데스크/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)


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(①융합 R&D 지원) 2026년 3월 19일(목) ~ 4월 20일(월) 16:00까지

※ 「②기업지원데스크」, 「③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」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

□ 신청서류 :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[붙임] 참조

※ '융합 R&D 지원' 과 '기업지원데스크' 및 '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' 의 최대 3개까지 동시 신청 가능

□ 신청방법 : 신청서류 E-mail(hyoseon.cha@kanc.re.kr) 제출

※ 4.20 16시 도착분에 한함

□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 문의

주관기관	전화	E-mail
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	031-546-6522 / 6523	hyoseon.cha@kanc.re.kr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, 가급적 E-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선정방법

□ 평가방법

○ (융합 R&D 지원)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격 검토,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·대면평가

○ (기업지원데스크 /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)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, 신청자격 검토 및 예산 소진 시까지 기술원 자체 검토를 통한 선착순 선정

□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

○ (융합 R&D 지원) 사업 아이템의 추진계획 및 적정성, 기술성(혁신성), 시장성 및 경제성 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

구분	평가지표	배점
추진계획 및 적정성 (30)	○ 추진계획 적정성 및 목표수준 등의 구체성	10
	○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	10
	○ 한국나노기술원과의 연계(양자패, 나노패 활용 등) 가능성	10

구분	평가지표	배점
기술성 (30)	◦ 기술의 우수성 및 기술구현의 현실성	10
	◦ 개발 기술의 타기술(경쟁자) 대비 독창성·차별성(혁신성)	10
	◦ 기술 보유 현황 (인증, 특허 등) 및 획득 가능성	10
시장성 및 경제성 등 사업성 창출효과 (40)	◦ 개발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진출 파급효과	10
	◦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및 고용효과	10
	◦ 해당 기술 및 제품의 수출가능성	10
	◦ 수요고객 연계 및 투자가능성	10
합 계		100

○ (기업지원데스크 / 양자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) 기술컨설팅의 필요성, 시급성,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매칭 가능성, 반도체-양자 융합 R&D로 연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□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(70점 미만 시 탈락)

□ 평가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통보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

6. 기타사항

□ 이행보증보험 가입

○ ‘융합 R&D 지원’ 선정기업은 도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 보증보험증권에 가입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전용통장으로 先 지급됨(단,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)

※ 발급 수수료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해야 함(사업비로 불인정)

□ 향후 최종 연차평가 결과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사업비의 50% 환수 조치, 90점 이상의 경우 추가 사업위원회를 통한 2차년도 지원후보 결정

□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업은 공동기관과 계약[양식4]을 체결하고, 기술원과 협약 체결 이전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주관기업에 있음

□ 지원제외대상(융합 R&D 지원에 한함)

※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선정 및 협약 이후에도 지원제외 사항 확인 시 지원 제외 및 협약이 무효처리 됨

○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
○ 휴·폐업중인 기업

○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
가. 부도기업

나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)

다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
라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한 중소(견)기업

마.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(견)기업

○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○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○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,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○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, 「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(2026.1.8.)」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(1회 이상)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 확인 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) 사업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※ 위반사실 적용 법률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
주의사항
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

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
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-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